

거주/숙소제공 확인서

- 국 적 : _____
- 성 명 : _____
- 외국인등록번호 : _____
- 체 류 지 : 도 시(군) _____
- _____

위 외국인은 본인(회사)이 소유(임대)하고 있는

[]기숙사 []임대숙소 []임대주택 []기타()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.

※ 회사소유가 아닌 개인 임대주택(아파트)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입증서류 첨부

_____년 월 일

확 인 자

소 속 : _____ 직책 : _____

전 화 번 호 : _____

위 외국인과의 관계 : []고용주 []친척 []기타() _____

성 명 : _____ (인/서명)

출입국관리사무소장(출장소장) 귀하

<알림>

법무부는 2013.10.10 일부터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류지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(임대차계약서, 숙소제공 확인서,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, 공공요금 납부영수증, 기숙사비 영수증 등) 제출을 의무화 하였으니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체류지 입증서류는 법령에 따라 징구하는 서류로 미제출 시 체류허가 불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